

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에 관한 세부 운영 방법(변경안)

< 관세국경감시과 >

I. 관련 근거

- ☐ 관세법 제177조(장치기간) 제1항제1호다목
- ☐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(장치기간) 제5항제4호

II. 주요 내용

- ☐ [중계무역* 물품 보관규제 완화]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 확대
(6개월 → 1년)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 보관 허용

*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무역형태

- 관세법 제177조(장치기간) 제1항제1호다목의 “국제물류 촉진에
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”에 중계무역 물품 추가

구 분	현 행	개 선
보 관 기 한	6개월 (6개월 범위 연장 가능)	1년 (일정 요건 충족시 장기 보관 허용)

III. 세부 운영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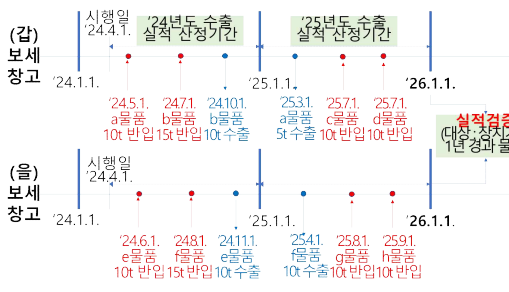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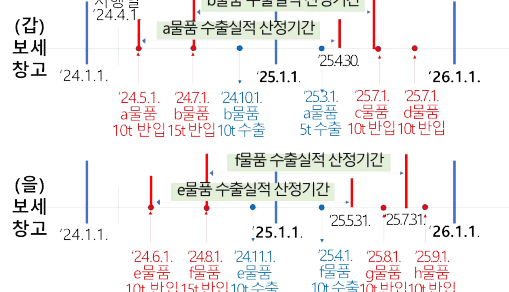
- ☐ [반입신고] 중계무역 물품으로 장기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화주의
요청을 받은 보세창고운영인이 ‘중계무역 물품’으로 반입신고*

* 반입신고서 ①‘용도구분’ 항목에 “[R]중계무역물품”, ②화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

- 〔장치기간〕반입신고서의 ‘용도구분’ 항목에 ‘중계무역물품’으로 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장치기간 기본 “1년” 부여
- 〔장치기간 연장〕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중계무역 수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장치기간 연장신청
- 〔장치기간 연장 요건〕^①장기간 보관하여도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물품으로서, ^②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 30% 이상
 - 〔수출실적* 비율〕중계무역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 동안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된 동일 화주의 중계무역 물품의 합계 중량(금액) 대비 중계무역으로 수출된 물품의 합계 중량(금액**) 비율
 - * 수출신고서 ‘⑩거래구분’란에 ‘79(중계무역수출)’로 기재한 물품에 한함
 - ** 수출실적 비율은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화주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요청하는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
- 〔장치기간 연장 승인〕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장치기간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을 1년 단위 연장 승인
- 〔장치기간 연장 요건 미충족 물품 처리〕수출실적 비율 등 장기간 연장 요건 미충족 시 장치물품에 대해 매각절차 진행

IV. 운영 기간

- 공문 시행일 이후 부터 「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 전까지
- 다만,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 확인은 전산 시스템 개선 전까지 서류제출을 받아 수작업으로 확인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기 준	☞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장소에 관계없이 화주 (사업자등록번호 단위)별 전체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재고량 대비 중계무역 수출 실적(수출신고수리일)	☞ 해당 보세창고에 중계무역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(1년) 동안 동일 화주의 중계무역 물품으로 반입된 물품의 합계 중량 대비 중계무역으로 수출된 물품의 합계 중량
산 식	☞ $\left[\frac{(00\text{년도 중계무역 수출 총 중량})}{(00\text{년말 기준 중계무역 물품 재고 총 중량})} \right] \times 100$ * 중계무역 수출실적 산정기간 : 매년 1.1. ~ 12.31.	☞ $\left[\frac{(\text{해당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중계무역 수출 총 중량})}{(\text{해당 보세구역에 반입된 중계무역 물품 총 중량})} \right] \times 100$ * 중계무역 반입실적 및 수출실적 산정 기간 : 중계무역 물품 반입일로부터 1년
장치기간 연장	☞ 세관장이 결정 통보 - 세관장이 화주별 중계무역 반입량과 수출실적을 확인하여 실적기준(30%) 충족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	☞ 화주가 장치장소별 연장 신청 - 화주가 장치장소 별 중계무역 수출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치장소 관할세관장에게 연장 신청 - 중계무역 수출실적 요건(30%) 을 충족하는 경우 반입 물품별로 매 1년 단위로 장치기간 연장 승인
수출실적 검증 예시	☞ 화주 A가 (갑)과 (을)보세창고에 중계무역 물품을 아래와 같이 반입하여 수출한 경우  ☞ '26.1월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 계산 - (갑), (을)보세창고 반입·수출실적 각각 합산 * 수출실적: $b(10t) + a(5t) + e(10t) + f(10t) = 35t$ * 중계무역물품 재고량: $a(5t) + b(5t) + c(10t) + d(10t) + e(0t) + f(5t) + g(10t) + h(10t) = 55t$ * 수출실적 비율 : $35t \div 55t = 63.6\%$ - 수출실적 기준을 충족하므로 장치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a, b, e, f 물품 장치기간 자동 연장 - 장치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c, d, g, h는 검증 제외 ☞ 중계무역 수출실적 비율이 30% 미만이면 1년을 초과하여 장치하고 있는 중계무역 물품에 대하여 매각절차 진행	 - 보세창고별 반입물품별 장치기간(1년) 경과 시점에서 중계무역 물품 반입량, 수출실적 각각 계산 - a물품 장치기간 : '24.5.1 ~ '25.4.30. * 장치기간 내 반입실적 : $a(10t) + b(15t) = 25t$ * 장치기간 내 수출실적 : $b(10t) + a(5t) = 15t$ * 수출실적 비율 : $15t \div 25t = 60\%$ - a물품 수출실적 기준 충족 -> 장치기간 연장 - b, e, f 물품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출실적 검증